

의안번호	제 2009 - 18 호
의 결	2009. 9. 21.
연 월 일	(제20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차

I. 1팀 제24차 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가.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1
나. 기타 의견	5
II. 2팀 제16차 회의 ······	5
1. 일시·장소 ···································	5
2. 참석자	5
3. 주요 안건	5
4. 회의 요지	5
가.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5
나.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발표 관련	7
다. 전문위원 연구과제 관련	3
Ⅲ. 제19차 전체 회의 ······	9
1. 일시·장소 ···································	9
2. 참석자	9
3. 주요 안건	9
4. 회의 요지	9

	가. 제 2 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 9
	나. 기타 논의	13
IV.	향후 일정	14

별첨 김현석,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선정 검토" 김현석, "범죄유형별 구분에 따른 통계현황 분석" 서봉규, "제2차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 검토의견"

I. 1팀 제24차 회의

1. 일시ㆍ장소

○ 일시 : 2009. 9. 3.(목) 19:40 ~ 20:2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2. 참석자(5명)

- 김용철, 김현석, 서봉규, 이상원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4. 회의 요지

가.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1) 사기범죄, 문서범죄(공문서, 사문서), 절도범죄, 약취·유인 관련 범죄
 - 사기범죄, 문서범죄(사문서, 공문서), 절도범죄, 약취·유인 관련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2) 식품·보건범죄, 환경범죄

○ 식품·보건범죄, 환경범죄 중 중요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

준을 설정하는 데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3) 교통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 교통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 법)상 도주차량범죄, 공무집행방해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 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다수의견의 논거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 와 달리 고의범으로서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 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근래 공권력에 대한 빈번한 도전으 로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어 사법정책적 차원에서 양형기준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임
-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교통범죄의 경우 외국 양형기준에서 도 설정된 예가 거의 없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현재 촛불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역이므로 시기적으로 양형기준 대상 범죄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임

(4) 방화범죄, 마약범죄, 선거범죄

- 방화범죄, 마약범죄, 선거범죄는 대상범죄에 포함시키지 않 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다수의견의 논거는 방화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성이 그리 높지 않고,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사범이 양형기준 을 악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마약사범이 수사에 협조하 더라도 양형기준으로 인해 관대한 처분을 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으며, 선거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한 정치적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 등임

-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사건의 균등한 처리를 위해 마약범 죄, 선거범죄 등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5) 폭력범죄

- 폭력범죄는 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는 의견이 다수였음
- 다수의견의 논거는 폭력범죄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폭력범죄 전반에 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참조하여야 하고, 다루어야 할 죄명이 너무 많아 제2기 양형위가 다른 대상범죄와 함께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이므로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임
-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폭력범죄 중 폭행, 상해만을 대상범죄에 포함시키거나(제1의견), 흉기소지나 다중위력에 의한 중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범죄만을 대상범죄에 포함시킨다면(제2의견)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임

(6) 관련 사항

(가) 벌금형/징역형 결정 기준

-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벌금형 자체의 기준은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구분기준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신분과 자력이 실질적 처 벌효과를 좌우하므로 객관적 범죄내용만으로 획일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에 관한 외국 양형기준례가 거의

없듯이 그 시급성이 크지 않고, 벌금 선택 여부에 관하여 양 형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함

- 한편, 벌금형/징역형 결정기준이 결국 기소기준으로서 검사의 구약식 청구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기 소기준보다는 양형기준 설정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벌금형/징역형 결정기준이 기소기준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기소 된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제약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하 게 될 것이므로 그 설정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 이 제시됨

(나) 적정 대상범죄 수

○ 제2기에서 어느 정도의 양형기준을 만들 것인지와 관련하여, 1기 양형기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응 등을 고 려할 때 제2기에서는 가급적 많은 수의 양형기준을 만들어 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 연방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양 형기준 설정 속도가 너무 빨라 성급하게 양형기준을 양산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수의 범죄만을 대상범죄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선정 절차

○ 대상범죄 선정에 관하여 국회, 법무부, 대한변협, 경찰청, 형사법학회, 형사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1기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중복적인 의견조회의 필요가 적고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

될 우려가 있다는 있다는 반론이 제시됨

나. 기타 의견

○ 대상범죄의 선정과 함께 향후 업무를 어떤 일정에 따라 어떻 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시됨

Ⅱ. 2팀 제16차 회의

1. 일시ㆍ장소

○ 일시 : 2009. 9. 4.(금) 17:30 ~ 19:0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2. 참석자(4명)

○ 김한균, 박영식, 윤정근, 이주형 전문위원

3. 주요 안건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4. 회의 요지

가.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1) 사기범죄, 문서범죄(공문서, 사문서), 절도범죄
 - 사기범죄, 문서범죄(사문서, 공문서), 절도범죄를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2) 식품·보건범죄

○ 식품·보건범죄 중 중요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하는 데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3) 환경범죄

- 환경범죄는 학문적으로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범죄유형이므로 검토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대부분 벌금 액수가 문제되는 분야라서 대상범죄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최근 식품·보건사범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중요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4) 교통범죄

- 교통범죄에 대하여는, 비록 교통사범의 상당한 부분이 벌금 으로 기소되고 있긴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특가 법위반(도주차량)의 경우만 합쳐도 전체 구공판사건의 10퍼 센트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포함하 면 16.8퍼센트로 가장 많으므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범죄에 해당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많이 접하는 범죄인 교통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외에 일반 교통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2인)과 구

약식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준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5) 폭력범죄

-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발생빈도가 구공판 사건 점유율의 7번 째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폭력범죄는 구성요건과 태양이 극히 다양하므로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 김현석 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로드맵과 같이 제2기에서는 재산범죄를 주로 설정하고, 제3기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2인) 등이 제시됨

(6) 마약범죄

- 마약사범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나 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대상범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선고되는 형이 주로 징역 형이므로 설정 대상범죄로 선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김현석 전문위원이 제시한 로드맵 내용과 같이 제3기 양형위원회의 기준설정 대상범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2인)이 제시됨

나.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발표 관련

○ '양형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주 형 전문위원이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팀회의 발표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전문위원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제의 성격상 한 두번의 회의로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다음 회의 이후 1팀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미 양형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고,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고 일부 논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보고서로 볼 것이 아니고, 양형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추가된 부분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연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다음 회의 시에 정식으로 논의 주제로 삼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전문위원 회의 시 논의하자 는 의견이 제시됨
 - 이번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주제로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음 회의 시 논의하여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차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정식 논의 주제를 삼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형 전문위원이 차회 전문위원 팀회의 시 발표하는데 동의하여 차회 팀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함

다. 전문위원 연구과제 관련

- 제2기 양형위원회가 발족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므로, 제2기 전문위원단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와 과제의 분장에 관 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동의하면서, 19차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분담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다음 전체회의 논의주제로 삼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Ⅲ. 제19차 전체 회의

1. 일시ㆍ장소

○ 일시 : 2009. 9. 8.(화) 19:20 ~ 21: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박영식, 서봉규, 윤정근, 이 상원, 이주형, 조은경, 최석윤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4. 회의 요지

가.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1) 사기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절도범죄
 - 사기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절도범죄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2) 식품·보건범죄

○ 식품·보건범죄 중 중한 유형을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3)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범죄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제시되 지 아니함
-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아동유괴, 인질강도, 인신매매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제1기에서 양 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성범죄 등과 경합범이 될 가능성이 높음

(4) 교통범죄

- 교통범죄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 견이 나뉨
- 양형기준의 목적이 불합리한 양형편차의 해소에 있다고 본다면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교통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의 시급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유형에 한하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교통범죄는 설문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발생빈도 또한 높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며, 하나의 범죄유형 내에서는 가급적 전 체적이고 종합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통범죄 전반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5)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 의견이 나뉨

-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편차가 문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설정의 시급성이 크지 아니하고, 폭력범죄 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 폭력범죄와 함께 3기 이후에 논의 되는 것이 타당하며, 공권력 보호라는 정책적 관점을 우선시 할 상황은 아니므로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가 폭력범죄와 반드시 결합되는 것은 아니며, 제1기 위원회에서 위증·무고범죄가 포함된 것처럼 정책적 고려에 의한 선정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재로서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시급성 이 크지 아니하나, 만일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라면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함께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도 제시됨

(6) 마약범죄

- 마약범죄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 견이 나뉨
- 마약범죄의 경우 실무상 양형편차가 크지 않고, 양형기준 설정 시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처리 및 자백의 양형인자 처리 등과 같이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양형 기준이 설정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상범죄로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유사한 마약사범 간의 균등한 처리를 위하여 기준 설정이 필요하므로 대상범죄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 견도 제시됨

(7) 환경범죄

- 환경범죄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 견이 나뉨
- 국민적 관심이 높으므로 식품·보건범죄와 마찬가지로 중한 유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과 학문적인 실체가 불분명하고 벌금액수가 문제되는 사 안이 대부분이므로 대상범죄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립

(8) 선거범죄

- 선거범죄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 견이 나뉨
- 선거법 자체가 빈번히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이 안정적으로 설정되기 곤란하여 대상범죄로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추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이에 대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당선무 효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대상범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9) 폭력범죄

○ 폭력범죄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 견이 나뉨

- 폭력범죄의 경우 폭행, 상해, 협박, 손괴 등 세부적인 죄명이 많아 로드맵에 따라 3기 이후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상범죄로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이에 대하여, 폭력범죄도 동시에 세부 죄명을 전부 설정할 필요는 적으므로 폭행과 상해에 관해서 먼저 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흉기소지나 다중위력에 의한 중대한 폭처법위반 유형만을 대상범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10) 방화범죄

○ 방화범죄는 양형기준 설정의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기 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고,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11) 관련 사항

- 제1기 위원회에서 기준 설정한 대상범죄 수 등을 고려하면 제2기 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와 달리 최초 양형기준의 운영점검 및 보완, 양형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수의 대상 범죄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기타 논의

○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이후 전문위원 회

의에서 심도있게 진행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문위원단이 새로 구성된 만큼 이후 연구과제의 확정과 분 장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토의 성과를 12월경 위원회에서 의결할 내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확정 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제2기 위원회에서는 운영지원단에서 전문위원단에게 양형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분석 결과를 제1기보다 더욱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최초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점검 자료 (법원별・재판부별 양형편차 감소 정도, 양형기준 준수율 및이탈율, 이탈 사유의 분포 등)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Ⅳ.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20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20차 회의 결과를 참 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